

## 가계대출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(가계용)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-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**반드시** 확인·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

### +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- **가계대출**은 가계가 생계유지 등 기타 사용목적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총칭하며, 대표적으로 **신용대출** 상품이 있습니다.
- **신용대출**은 고객님의 소득 등에 따라 평가되는 **개인 신용도에** 기반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가 산정되는 대출상품입니다. 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,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나 일반적으로 **금리수준이 높은 경우**가 많아 동일한 금액을 **신용대출로 이용하는 경우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** 있습니다.

### + 민원·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

#### ↳ Q1. 대출과 신용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?

- 대출상품 이용 시, **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**,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다른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등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## ↳ Q2.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가요?

-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며,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(집단성가계대출 등)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## ↳ Q3.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
-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**중도상환해약금이**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예: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, 최대 140만원 부과)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의 잔여일수 및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, 중도상환 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.

#### ↳ Q4. 대출상품을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?

-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,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, 대출상품에 따라 인지세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+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
△ **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,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** △

(예: 대출원금이 1억원인 경우, 최대 월 연체이자 125만원 발생)

상세내용은 본 상품설명서의 [7.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]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+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-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[www.nonghyup.com](http://www.nonghyup.com)) 또는 고객센터(1661-3000,1522-3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<http://www.fcsc.kr>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
## 1 상품개요 및 특성

|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상 품 명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 |
| 적용(예상)금리         | _____ %   | 대출금액             | _____ 원  |
| 금리적용방식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 | 대출기간<br>(또는 만기일) | _____  |
| 중도상환해약금<br>부과 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휴일대출상환<br>대상여부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대상 |

- ✓ 대출금리 변동 등으로 상품설명 단계에서 고객님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✓ 대출계약 체결로 고객님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**대출금액과 이자, 수수료 등**을 합산한 총액이며, 정확한 금액은 **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**하므로 심사 후 은행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

☑ 중도상환해약금 : [ 중도상환원금 × 중도상환해약금률 ×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 ]

- ☞ 중도상환해약금률은 상품에 따라 **0.6%~1.4%**입니다. (통상 고정금리 및 혼합금리 방식이 변동금리 방식보다 0.2%p 높습니다.)
- ☞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**3년까지 적용**합니다. 대출만기까지 **1개월 미만**이 남은 경우에는 **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**

※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**고객이 부담**하는 금액입니다.

- 다만,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(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)을 체결한 경우,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**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**됩니다.
- (예시) 3년 만기 대출을 받고나서 1년 후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나에게 적용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은?

- 중도상환금액 1억원, 중도상환해약금률 1.4%(부동산담보대출, 고정금리), 대출잔여일수 730일, 대출기간 1,095일 : 1억원 × 1.4% × (730 ÷ 1,095) ≒ 933,333원
- 중도상환금액 1억원, 중도상환해약금률 0.7%(신용대출/기타담보대출, 고정금리), 대출잔여일수 730일, 대출기간 1,095일 : 1억원 × 0.7% × (730 ÷ 1,095) ≒ 466,666원

☑ 인지세 : ( \_\_\_\_\_ ) 원

※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.

| 대출금액 | 5천만원 이하 | 5천만원 초과<br>1억원 이하 | 1억원 초과<br>10억원 이하 | 10억원 초과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인지세액 | 비과세     | 7만원               | 15만원              | 35만원    |
| 고객부담 | -       | 3만 5천원            | 7만 5천원            | 17만 5천원 |
| 회사부담 | -       | 3만 5천원            | 7만 5천원            | 17만 5천원 |



**고객이 부담하는 비용**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| 부담하게 되는 금액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존 근저당권<br>설정등기의 금액/말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건당 비용 발생 (보통 건당 50,000원)</li> </ul>  |
|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% X 일별 채권할인율(근저당권 설정일 기준)<br/>* 예시) '21.7.30일 기준 1억원 설정시 43,750원 부담</li> <li>※ 상세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</li> </ul> |

**은행이 부담하는 비용**

※ 다만,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.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| 부담하게 되는 금액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근저당권 설정 신규 설정비용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등록면허세 + 지방교육세 + 법무사수수료 등</li> <li>* 예시) 대출금액 1억(채권최고액 1.2억) 기준<br/>등록세 20만원 + 교육세 4만원 + 법무사수수료 19.4만원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|
| 기존 근저당권<br>설정등기의 주소 변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1건 : 30,000원</li> <li>■ 2건 이상 : 1건당 10,000원 추가</li> </ul>   |
| 확인 서면<br>(등기필증이 없는 경우) | 법무사 보수료 100,000원   |
|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따라 상이</li> <li>* 예시) 일반지역 27,500원, 원거리지역 37,500원</li> </ul>  |
|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수수료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종류, 주소지, 감정가격 등에 따라 상이</li> <li>* 예시) 서울 단독주택 감정가 9억 기준, 약 94만원(수수료 88.4만원 + 실비 5.6만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
| <b>담보신탁 수수료</b>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신탁보수료 및 법무사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. 다만, 투자금융(IB)으로 개별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신탁계약에서 비용부담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</b></li> </ul> |

**기타 수수료** : 항목 ( ) 금액( ) %, 원

**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** : 항목 ( ), ( ) 원  
 •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
- **채무자의 채무불이행**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**채무자가 부담**하여야 합니다.
- **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**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,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**채무자가 부담**하여야 합니다.

**3 금융소비자의 권리**

**가. 청약철회권**

- 일반금융소비자는 ① **계약체결일**, ② **계약서류를 받은 날**, ③ **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내에**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)
-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**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** 등으로 **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**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**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**, 대출과 관련하여 **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용**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**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**되며,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**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**, **신규대출-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



## 나. 금리인하요구권

[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]  대상  비대상

※ 아래 주요내용을 **차필로**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예 : 취업·승진 등 소득증가, 재산증가, 신용평가등급(평점) 등 신용도 상승, 기타 신용상태 개선\*) 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은행법 제30조의2)를 말합니다. 단,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- \* 수신 거래실적(수신평잔 등)의 증가 및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수되는 신용정보(여신거래, 연체이력 등)의 개선 등
-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,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**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**
- 은행은 **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**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, 서면, 문자메세지, 전자우편,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
## 다. 위법계약해지권
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**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**
  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  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  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  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  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**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** 범위에서 **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**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## 라. 자료열람요구권

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**8일 이내**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**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**



## 마. 개인신용평가대응권

※ 아래 주요내용을 **차필로**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◎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**자동화평가\*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**과 **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**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**정정·삭제·재산출을 요구**할 수 있는 권리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)를 말합니다.

\* 은행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

◎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,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,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**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**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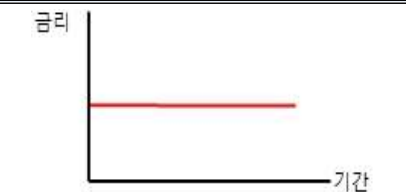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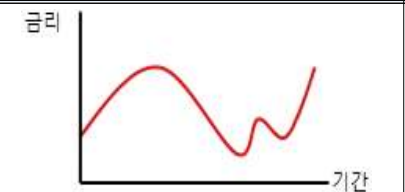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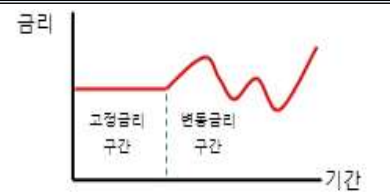
\* 서면, 전자우편, 인터넷 홈페이지,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

◎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**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**, 기초정보가 정정·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, **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.**

-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
-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-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

## 4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요인

◎ 대출금리의 종류는 크게 **고정금리** 방식, **변동금리** 방식, **혼합금리** 방식으로 구분되며, 고객님의 가입하신 상품은 [ **금리** ] 방식의 상품입니다.

|       | 고정금리  | 변동금리   | 혼합금리  |
|-------|---|--|---|
| 운용 형태 |  |  |  |
| 특징    | ▶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| ▶ 일정주기(3/6/12개월 등) 마다 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이 결합된 형태  |
| 장점    | ▶ <b>시장금리 상승기</b> 에 금리 인상이 없음   | ▶ <b>시장금리 하락기</b> 에는 이자 부담 경감 가능   | ▶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적 형태로서 <b>금융소비자의 자금 계획에 맞춘 운용</b>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단점    | ▶ <b>시장금리 하락기</b> 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| ▶ <b>시장금리 상승기</b> 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<br>※ 금리상승기의 이자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의 상한수준을 미리 정하는 형태의 상품도 있음 |   |



○ 대출금리 결정(변동)요인

-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목표이익률(마진)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.
-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.



- 대출 기준금리는,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 실제 변하는 금리로, 고객님은 코픽스(COFIX), 금융채 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(CD금리 등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음), 기준금리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.

| 구분   | 금융채   | COFIX(신규취급 기준)   | COFIX(신잔액 기준)   |
|------|---|--|---|
| 내용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금리</li> <li>▶ 만기 6개월, 1년, 5년 등 대출만기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(매일 공표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COFIX(Cost of fund index, 코픽스)는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'조달비용지수'를 의미하며, 주요 8개 은행의 예적금·금융채 등 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</li> <li>▶ 매월 15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고시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기준) 신규취급액</li> <li>▶ (기간) 공시 전월 1개월</li> <li>▶ (항목) 정기예금, 정기적금, 금융채, CD, RP 등 8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
| 특징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장금리이므로, 금리 상승기 금리 하락기 변동 상황을 그대로 반영</li> <li>▶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경향(시장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단기물 금리가 높은 경우도 발생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장금리보다 예·적금금리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음</li> <li>▶ 전월 취급된 조달금리의 가중평균이므로 은행의 최근 조달금리 상황을 반영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월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금리가 낮은 결제성 자금도 포함</li> <li>▶ 신규취급에 비해 금리 상승기 상승속도가 완만하나, 금리하락기에는 신규취급에 비해 하락속도도 완만</li> </ul> |
| 변동예시 | <p>— 1년물 — 5년물</p>  | <p>— 신규 — 신잔액</p>  |   |

☞ 고객님의께서 선택하신 대출 기준금리는 ( )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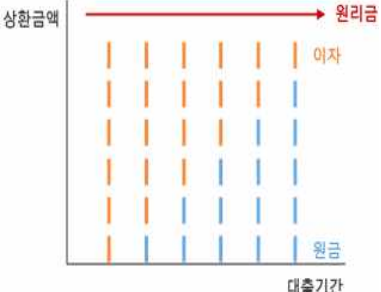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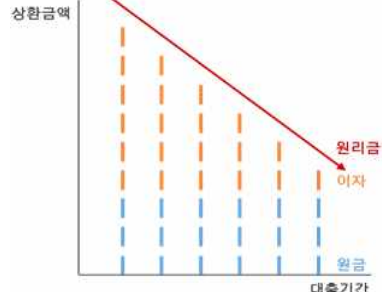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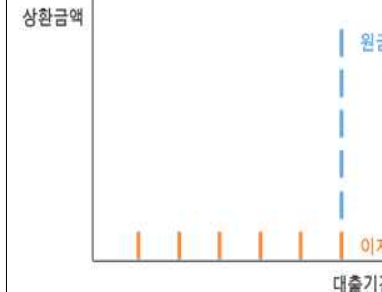
-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,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.
  - 리스크 프리미엄 :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
  - 원가요소 : 고객의 신용도·담보종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, 업무원가(인건비·전산처리비용), 세금(교육세 등) 및 준조세성 부담금(보증기관 출연료 등) 등
  - 목표이익률 : 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
  - 가감조정 전결금리 : 부수거래(급여통장 개설·카드실적·수신실적 등) 감면금리, 전결 조정 금리 등

-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(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,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)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신용등급 변동, 기한연장,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
## 5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

### ◎ 상환방법별 특징

| 원리금 균등상환  | 원금 균등상환   | 만기 일시상환   |
|---|---|---|
|  <p>상환금액</p> <p>원리금</p> <p>이자</p> <p>원금</p> <p>대출기간</p>  |  <p>상환금액</p> <p>원리금</p> <p>이자</p> <p>원금</p> <p>대출기간</p>  |  <p>상환금액</p> <p>원금</p> <p>이자</p> <p>대출기간</p>   |
| <p>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매월 총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, 이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.</li> <li>▶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 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.</li> </ul> | <p>“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,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.</li> <li>▶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 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.</li> </ul> | <p>“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대출원금을 대출 만기일에 전부 상환하며,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합니다.</li> <li>▶ 원리금 상환금액 부담은 가장 적으나, 대출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총 납부해야하는 이자 비용이 가장 큼니다.</li> </ul> |

### ◎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·이자율·시기

- 고객님의께서 선택하신 상환방법은 ( )입니다.
- 동일한 금리·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하단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◎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(1억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5%로 대출받은 경우)

※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,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,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-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

| 상환기간 | 원금      | 이자      | 상환금액    | 대출잔액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년   | 1,810만원 | 500만원   | 2,310만원 | 8,190만원 |
| 2년   | 1,900만원 | 410만원   | 2,310만원 | 6,290만원 |
| 3년   | 1,995만원 | 315만원   | 2,310만원 | 4,295만원 |
| 4년   | 2,095만원 | 215만원   | 2,310만원 | 2,200만원 |
| 5년   | 2,200만원 | 110만원   | 2,310만원 | 0원      |
| 합 계  | 1억원     | 1,550만원 | 1.155억원 | -       |



- 원금 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

| 대출기간 | 원금      | 이자      | 상환금액    | 대출잔액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년   | 2,000만원 | 500만원   | 2,500만원 | 8,000만원 |
| 2년   | 2,000만원 | 400만원   | 2,400만원 | 6,000만원 |
| 3년   | 2,000만원 | 300만원   | 2,300만원 | 4,000만원 |
| 4년   | 2,000만원 | 200만원   | 2,200만원 | 2,000만원 |
| 5년   | 2,000만원 | 100만원   | 2,100만원 | 0원      |
| 합 계  | 1억원     | 1,500만원 | 1.15억원  | -       |

-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

| 대출기간 | 원금  | 이자      | 상환금액   | 대출잔액 |
|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|
| 1년   | 0원  | 500만원   | 500만원  | 1억원  |
| 2년   | 0원  | 500만원   | 500만원  | 1억원  |
| 3년   | 0원  | 500만원   | 500만원  | 1억원  |
| 4년   | 0원  | 500만원   | 500만원  | 1억원  |
| 5년   | 1억원 | 500만원   | 1.05억원 | 0원   |
| 합 계  | 1억원 | 2,500만원 | 1.25억원 | -    |

● 상환방법 등에 따른 유의사항

-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: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,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**상환 부담이 증가**할 수 있습니다.
-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: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, **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** 있습니다.

6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

※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**재산상 손실**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(근질권)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, 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(저당권·질권 등)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●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

- **대출의 변제기가 도래**하였거나 **기한의 이익이 상실**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, 은행은 법정절차\*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**소유권을 상실**하게 됩니다.

\*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(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)한 후 그 경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

※ **기한의 이익**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,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의미합니다.





## 7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

### 가. 연체이자 부담

- 연체이자율은 [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]로 적용합니다.

- 연체가산이자율 : 연 3%
- 연체이자율은 **최고 연 15%**로 합니다.

-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
#### ①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**1개월이 경과하면**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**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**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.

#### ② 「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#### ③ 「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, **2회 이상** (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) **연속하여 지체**한 때에는 **기한의 이익상실**로 인하여 **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**를 내셔야 합니다.

(예시) 원금 1억2천만원(월 1백만원 분할상환), 약정이자율 연 5%, 연체가산이자율 연 3%인 신용대출의 분할상환금(1백만원) 및 이자(50만원)를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, 연체발생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

| 연체기간       | 연체이자 계산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체이자    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연체발생~30일분  | 지체된 분할상환금 및 약정이자(150만원)×연8%(5%+3%)×30/365 | 9,863원   |
| 연체31일~60일분 | 원금(1억2천만원)×연8%(5%+3%)×30/365              | 789,041원 |
| 계          |   | 798,904원 |

\* 분할상환금 및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는 별도

※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연체이자만을 1개월을 30일로 보고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. 연체이자는 대출조건, 이자일수계산,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

#### ④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

-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**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**를 내셔야 합니다.

※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예시 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중 발취)

- (1)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
- (2)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(제1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)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등

※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**즉시 상환**하여야 하며, 연체이자 부담,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를 **반드시**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⑤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

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,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-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,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**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**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나. 그 밖의 불이익

-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**단기** 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(신용카드 정지 등)받을 수 있고,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 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,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  -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- **장기** 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**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**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**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**,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(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, 신용점수 하락 등)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8.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

-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,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너무 긴 경우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  -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, **대출계약 연장이 거절**될 수 있습니다.
  -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(한도대출), 대출계약 연장 시 **한도가 감액**될 수 있습니다.
  -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(공무원대출 등 기타 협약대출 등)의 경우 **자격이 유지되는 경우**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## 9.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
- 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**개인신용평점이 하락**할 수 있으며,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**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**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**불이익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



## 10 기타 유의사항

### ● 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

-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**3년 이내의 기간**에만 부여됩니다.
-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대출심사 거절 시 발생한 비용(등기설정·말소비용, 감정수수료 등)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.

- 은행은 고객님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추론하기 위하여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을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, 연소득 대비 연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은 경우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### ● 이자 납입방법

- 고객님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매월/매분기/매년)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, 이자 납입일(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)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(지연배상금 포함)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### ● 체크카드 연계 계좌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약정 관련 안내사항

- '체크카드'는 '신용카드'와 달리 신용공여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결제시 결제계좌에서 이용금액이 바로 출금처리 됩니다.
- 이에따라,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계좌를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이용할 경우 예금 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통장대출형식의 한도거래대출로 결제금액이 지급되고 대출 사용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●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

-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,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- ☞ (변경신청 전)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로 상환
  - ☞ (변경신청 후) 비용, 원금, 이자 순서로 상환
  - ☞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다만,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로 재변경을 원하시는 경우,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변경 접수 및 신청 이후 은행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미납된 이자 및 원금에 대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.



● **은행·채무자로부터의 상계**

- 상계란 채무자와 은행이 서로에 대해 금전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,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- 은행은 대출 등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, 채무자의 대출 등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대출 등 채무를, 그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.
  - ☞ 이 경우 상계한 예금 등의 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, 지체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- ☞ 이 경우 대출계약 등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수수료(중도상환해약금 등)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

● **채무조정요청권**

- 채무자는 실직, 폐업, 질병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곤란한 경우,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,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, 심사결과에 대해 채무자에게 곧 통보합니다.

**+** **연계·제휴서비스 관련 안내사항**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내 용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
| 연계·제휴서비스 내용             | -  |     |
| 연계·제휴서비스 이행책임           | • 농협은행은 연계·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,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·제휴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  |     |
| 연계·제휴서비스 제공기간           | • 대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0년<br>※ 단, 대출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계약의 종료해지 또는 철회 시 연계·제휴서비스 제공은 중단됩니다)   |     |
| 연계·제휴서비스 변경·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| •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전화, 팩스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축소·변경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<br>※ 단, 금융회사의 휴업·파산·경영상의 위기 또는 연계·제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의 일방적인 제공 중단 등 6개월 전부터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고지합니다. |     |
| 연계·제휴서비스 제공요건           | • 대출계약 체결 시 연계·제휴서비스 가입 및 개인(신용)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   |     |



## 11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

※ 아래 주요내용을 **자필**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   |   |
|----------|---|
| <b>1</b> |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<b>고객님의 신용평점이 하락</b> 할 수 있습니다. 은행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?   |
| ⇒        | ① 예 / ② 아니오   |
| <b>2</b> |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<b>3년 이내의 기간 동안</b> 에는 약정하신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<b>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</b> 할 수 있습니다. 은행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⇒        | ① 예 / ② 아니오   |
| <b>3</b> | 대출금 연체 시 <b>대출원금</b> 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, 연체이자를 일부 납입하는 경우에도 <b>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</b> 됩니다. 확인하셨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⇒        | ① 예 / ② 아니오   |
| <b>4</b> | 대출금 연체 등으로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<b>불이익이 발생</b> 할 수 있습니다.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<b>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</b> 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 확인하셨습니까? |
| ⇒        | ① 예 / ② 아니오   |
| →        | 본인은 NH농협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본 설명서를 교부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<u>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</u> 에 대하여 <u>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</u> 을 확인합니다.                |
| →        | 본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<u>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</u> 에 대하여 <u>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</u> 을 확인합니다.   |

20 . . .

(서명/인)

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**고객행복센터**(1661-3000,1522-3000)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**(www.nonghyup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**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
※ [부록]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| 용어   | 설명  |
|------|---|
| 개별거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객과 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을 대출실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.</li> </ul>   |
| 한도거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객과 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.</li> </ul>  |
| 압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</li> </ul>  |
| 강제집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.</li> </ul>  |
| 담보권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,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.</li> </ul>   |
| 근저당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.</li> <li>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
| 근질권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</li> <li>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는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</li> </ul>          |
| 양도담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</li> <li>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.</li> </ul>  |
| 담보신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탁자(소유자)가 소유 재산을 수탁자(신탁회사)에게 신탁(소유권 이전)하고 수탁자(신탁회사)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.</li> <li>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(공매)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.</li> </ul> |



| 용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명   |
|---|--|
| 대위변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3자(대위변제자)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(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)을 취득합니다.</li> </ul>   |
| 채무인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(구채무자)로부터 제3자(신채무자)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</li> <li>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(매수인)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담보대출도 제3자(매수인)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.</li> </ul>   |
| 채권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채권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기존 채권자(구채권자)로부터 제3자(신채권자)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</li> <li>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인(구채권자)에게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(신채권자)에 양도(담보로 제공)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.</li> </ul>  |
| 기한의 이익(상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.</li> <li>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.</li> <li>다만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(은행)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.</li> </ul> |
| 신용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번호 등), 신용거래정보(대출정보 등), 신용도 판단정보(연체정보 등), 신용능력정보(재무정보 등), 공공정보(체납정보 등)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.</li> </ul>  |
| 신용평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신용평가회사(CB사)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.</li> <li>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평점을 활용합니다.</li> </ul>   |
| 담보인정비율<br>(LTV, Loan-To-Value)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</li> <li>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금융당국 또는 은행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.</li> </ul>   |
| 총부채상환비율<br>(DTI, Debt-To-Income)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소득 대비 부채*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</li> <li>*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,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</li> <li>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(투기지역 등)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.</li> </ul>  |
|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<br>(DSR, Debt-Service-Ratio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소득 대비 부채*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</li> <li>*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</li> <li>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산출합니다.</li> </ul>   |
| 전세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기간 중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·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</li> </ul>  |

